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트인덱스알파증권자투자신탁 [주식-파생형]

□ 변경 사유

- (1) 제5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- (2) 자본시장법 및 세법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발생일 : 2015. 12.1.

□ 변경 내용

| 항목 | 정정전 | 정정후 |
|--|---|---|
|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| | |
| 5. 운용전문인력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 | 2015. 6. 30. | <u>2015. 10. 31.</u> |
|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 신탁의 투자제한] 2) 동일종목 투자 | 나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10% 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 자할 수 있음 (2)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: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한국은 행통안안정증권, 정부가 원리금 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제외)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(<u>법 제4조제3항에</u>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 관이 할인·매매·증개 또는 인 수한 어음만 해당)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 음·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지급 을 보증한 채권·어음, 법 시행 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, 마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, <u>경제협력개발기구</u> 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에 정한 주택저당채권, 주택저당채권 | 나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 에 투자할 수 있음 (2)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: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한국은 행통안안정증권, 정부가 원리금 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제외)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(<u>기업어음증권</u> 및 시 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·매매·증개 또 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), 법 시행 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 음·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지급을 보증한 채권·어음, 법 시행령 제 79조제2항제5호 가목,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 권, <u>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</u> <u>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</u> <u>려하여 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</u> <u>가가 발행한 채권, 주택저당채권</u> |



트러스트인덱스
증권자투자신탁

| | | |
|---|--|--|
| |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) | 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), <u>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</u> |
|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 [이)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 5) 집합투자증권 투자 | 나) 사모집합투자기구(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| 나) <u>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를 초과하여</u> 사모집합투자기구(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|
|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| 제5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| <u>2015. 9. 6. 기준</u> |
|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| | |
| 1. 재무정보 | 제5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| <u>2015. 9. 6. 기준</u> |
|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| 제5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| <u>2015. 9. 6. 기준</u> |
|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| 제5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| <u>2015. 9. 6. 기준</u> |
|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| | |
|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. 정기보고서 (2) 자산운용보고서 |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(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)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|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(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)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|



트러스톤자산운용

| | | |
|--|--|---|
| | <p>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·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 · 판매회사의 본 ·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, 투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</p> | <p>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<u>투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,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</u>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·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 · 판매회사의 본 ·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, 투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</p> |
|--|--|---|



트러스톤자산운용